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439 |
|----------|------|

제출일자 : 2024. 1. 16

제출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1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개정(안 제4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3. 11. 16. ~ 12. 6.)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목 중 “높이제한”을 “높이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9미터이하”를 “10미터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9미터”를 “10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 ⑦ (생략)>